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8.] [충청남도조례 제4136호, 2016. 6. 8., 일부개정]

충청남도(사회적경제과), 041-635-39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2호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라. ‘협동조합’이란 도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비영리단체
 -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국장 과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대표하는 조직의 대표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도의회 의원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자
 5.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대표 및 기업 경영 전문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회의록과 의결서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5항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1.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해당 업체의 용역·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 5.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6. 도와 시·군,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 8. 제16조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조세감면)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2.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4.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5.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홍보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2(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연구원 내에 사회적경제연구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4. 사회적경제 지역자원 발굴 및 모델 개발
5. 도민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